

「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청 접수하고자 하는 지역 내 우수 강소기업에 대하여 기업컨설팅, 근로환경개선금, 기업문화 개선 및 복지 지원 비용을 지원하고자 『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지원 사업』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.

2024년 3월 29일

(재)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청년이 일하고 싶은 요건을 갖춘 경쟁력 있는 지역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청년친화 기업문화 확산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,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

□ 사업내용

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및 청년인재 중소기업 유입 촉진

□ 지원내용

구 분		지원내용
필수 지원	기업 컨설팅	·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에 필요한 항목 컨설팅
선택 지원 (중복지원불가)	근로환경개선금	· 복지공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▶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(부가세 제외)
	기업문화 개선 및 복지 지원	·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, 동아리 및 학습조직 활동 등 복지 지원 ▶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(부가세 제외)

2. 모집개요

□ **공고기간** : 2024. 3. 29.(금) ~ 4. 16.(화)

※ **접수기간** : 2024. 4. 1.(월) ~ 4. 16.(화) 18: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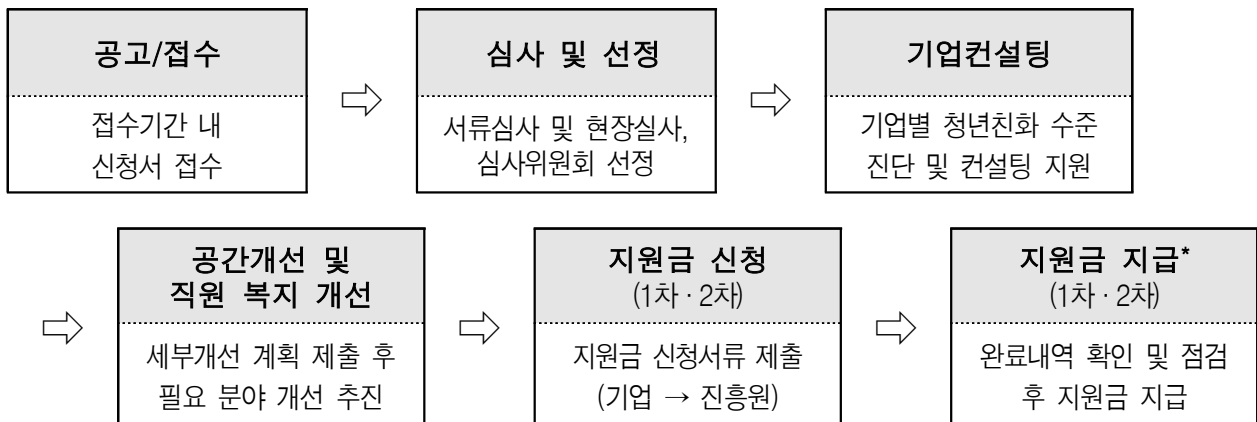
□ 모집대상

- 공고일 이전부터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·중견기업으로서 다음의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관내 기업

신청제외 대상

- ① 최근 2년 연속 전년 대비 매출액 15% 이상 감소 기업
 - 신용평가기관(NICE신용평가 등)에서 발급한 최근 기준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
- ② 신용평가등급 BB- 미만 기업
 - 신용평가기관(NICE신용평가 등)에서 발급한 최근 기준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
- ③ 고용보험 성립일이 2021. 12. 31. 이후인 기업
 -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심사를 위해 신청기업의 고용보험 성립일은 '21. 12. 31. 이전이어야 함
- ④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기업(건설업은 30인 미만)
 - 2024. 2. 29.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(total.comwel.or.kr)를 통해 확인
- ⑤ 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('23. 12월 발표)에 이미 선정된 기업
 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를 통해 확인
- ⑥ 기타 사업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 -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결격요건에 해당됨이 확인되는 기업 등

□ 운영절차



* 지급요건 : (1차) 개선계획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지출이 완료되었음이 확인되고,
(2차)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접수(8~9월 예정, kangso.kova.or.kr)가 완료된 기업

3. 신청접수 및 선정

□ 접수기간 및 방법

- 접수기간 : 2024. 4. 1.(월) ~ 4. 16.(화) 18:00
- 접수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(도장/서명날인 후 원본제출)
 ※ 상기 제출시간 이내에 도착분만 인정
- 접수처 : (44248)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, 2층
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청년일자리팀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명	발급처(온라인) 등
필수	[서식1] 사업참여 신청서	붙임 서식 활용
	[서식2] 정보활용 동의서	
	[서식3] 참여기업 확인서	
	[서식4] 사전 진단표	
	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	국세청 홈택스, 대법원 인터넷등기소
	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, 중견기업 정보마당
	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2024. 2. 29. 기준)	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
	신용평가등급 확인서	NICE신용평가, 한국평가데이터 등
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정부24, 국세청 홈택스
선택	각종 정부 인증 및 포상 확인서(해당 시)	-

□ 심사 및 선정

- 선발일정(예정) ※ 선발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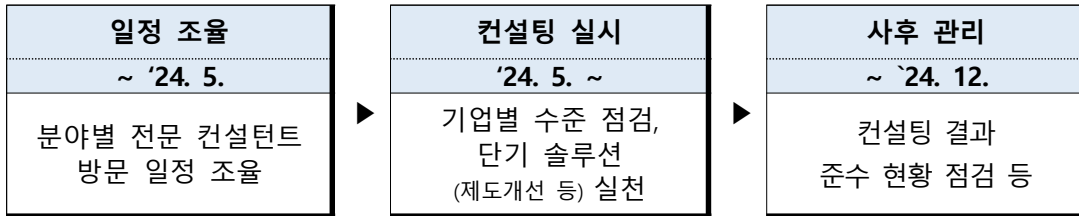
신청서 접수	1차 심사	2차 심사	3차 심사	최종발표
4. 1. ~ 4. 16.	4. 17.	4. 22. ~ 4. 26.	4. 30.	5. 2.
방문 및 우편접수	서류심사	현장실사	위원회 평가	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

- 선정방법 : 1차 서류심사 실시 후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, 3차 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선정 ※ 심사기준 및 배점표(붙임 1)
- 선정규모 : 10개사 내외(예산범위 내)

4. 지원 절차 및 주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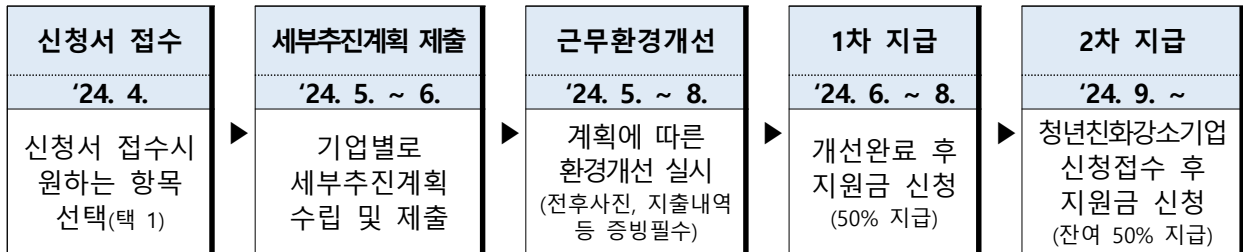
□ 기업 컨설팅

- ① (일정 조율)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방문 및 면담 일정 조율
- ② (컨설팅 실시) 컨설턴트의 개별 기업 청년친화 수준 점검 및 단기 솔루션 제공
- ③ (사후 관리) 고용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및 최종 인증 시까지 컨설팅 결과 준수 현황 점검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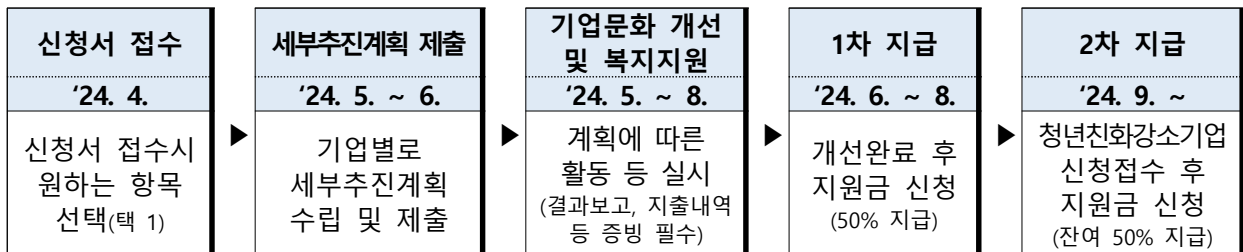
□ 근무환경개선금

- ① (신청서 접수) 최초 사업참여 신청시 원하는 지원항목 선택(근무환경개선 또는 복지지원 중 택 1)
- ② (세부추진계획 제출) 컨설팅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업별로 근무환경개선 세부추진계획 제출
- ③ (근무환경 개선) 제출한 세부추진계획 및 목적에 적합한 복지공간 도입 등 근무환경개선 실시
- ④ (1차 지급) 근무환경개선을 완료하고 지출증빙자료 등과 함께 지원금 신청시 50% 지급
- ⑤ (2차 지급)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(8~9월 예정) 완료 후 지원금 신청시 잔여 50% 지급



□ 기업문화 개선 및 복지 지원

- ① (신청서 접수) 최초 사업참여 신청시 원하는 지원항목 선택(근무환경개선 또는 복지지원 중 택 1)
- ② (세부추진계획 제출) 기업별로 기업문화 개선 및 복지 지원 세부추진계획 제출
- ③ (계획 실천) 제출한 세부추진계획 및 목적에 적합한 기업문화 개선 및 복지 지원 추진
- ④ (1차 지급) 기업문화 개선 및 복지 지원을 실시하고 지출증빙자료 등과 함께 지원금 신청시 50% 지급
- ⑤ (2차 지급)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(8~9월 예정) 완료 후 지원금 신청시 잔여 50% 지급



□ 지원혜택 관련 주의사항

- ✓ 근무환경개선금은 청년친화강소기업 통합선정지표 중 “복지공간” 도입 및 개선과 관련된 곳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
- ✓ 기업문화 개선 및 복지지원비는 청년친화강소기업 통합선정지표 중 “자기학습”, “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노력”과 관련된 활동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

[참고 1]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통합선정지표 중

항 목	세 부 지 표
복지공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구내식당 또는 카페테리아 ■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■ 기타 휴게 시설 등 복지 공간 ■ 스포츠센터 및 운동시설 ■ 육아시설(어린이집, 수유공간 등)
자기학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육비 및 자기 개발비 지원(자기주도 진학/교육) ■ 후진학(대학, 대학원 등) 참여 지원 ■ 교육제도 운영(기업주도) ■ 문화생활비 지원(취미활동지원) ■ 동호회 및 학습 조직
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근 2년 이내 조직문화 개선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, 간담회, 직원 의견수렴 등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노력 실적(건당) ※ 노사협의회 등 법령상 의무활동, 체육활동 등 제외

- ✓ 진흥원에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지출이 완료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
- ✓ 허위 및 거짓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기지원금 전액 반환 조치
- ✓ 지원 불가 항목
 - 개인 소지 및 휴대가 가능한 물품·자산인 경우
 - 근무환경개선의 효과가 일시적·단기적에 그쳐 지속되지 않는 경우
 -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현금성 지원인 경우
 - 기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

5. 기타 유의사항

- 신청제외 요건 등은 본사 사업자등록번호, 고용보험관리번호 기준으로 심사
-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제출기한 내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업체의 책임으로 함

- 신청기업은 현장실사 및 모니터링, 기업 컨설팅, 기타 추가자료 제출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타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
- 선정기업은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
- 제출한 서류는 심사 및 컨설팅 자료로만 활용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, 참여기업 확인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업체 선정이 취소됨
- 공고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-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청년일자리팀으로 문의

▲ (문의처) 일자리지원부 청년일자리팀 ☎ 052-283-7202 / ✉ windglow@ubpi.or.kr

